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제32조의2] 관련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대통령령 제27559호 일부개정 2016. 10. 27.

제32조의2 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비치 등 제외 제제)

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"란 다음 각 호의 제제를 말한다. [개정 2010.7.12 제22269호(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, 2011.10.25 제23248호(원자력안전법 시행령), 2012.1.26, 2012.6.7 제23845호(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), 2014.12.9 제25840호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), 2016.1.6 제26858호(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)]

1. 「원자력안전법」에 따른 방사성물질
  2. 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품·의약외품
  3. 「화장품법」에 따른 화장품
  4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
  5.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른 농약
  6. 「사료관리법」에 따른 사료
  7.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른 비료
  8.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
  9.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화약류
  10.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폐기물
  11.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
  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
  13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·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
- [전문개정 2009.7.30] [[시행일 2009.8.7]]  
[본조제목개정 2012.1.26]